

##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비공개)

1. 회의일시 : 2008. 3. 26(수), 17: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의결사항

1)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건 (2008-01-1)

2)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2008-01-2) (비공개)

- 송도균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임기는 위원 임기의 절반인 1년 6개월로 하고, 후반기 1년 6개월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함.

바. 기 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제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4월 2일(수)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8:30)

##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비공개)

1. 회의일시 : 2008. 4. 16(수), 15: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일괄적으로 확인하기로 함.

바. 의결사항

1)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건 (2008-03-1)

사. 보고사항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비공개)

- 박노익(융합정책과장)의 보고를 받고, 중요한 쟁점항목별로 요약한 문제점을 안건에 상세히 기술하고, 중요한 관련 고시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을 재보고 받기로 함.
-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주요프로그램의 범위와 관련,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IPTV 콘텐츠사업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계약행위 등에 있어서도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콘텐츠 거래의 공정거래를 견지하면서 IPTV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나, 시장에 대한 과다 규제가 되어서는 곤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시행령 제정안 검토에 앞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 고시방안을 사전 검토하기로 함.
- ‘사업자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시행령에 담아 사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과 고시로 결정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고시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관련 추진이 시행령 제정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함.
- IPTV 사업자의 ‘회계분리’ 기준에 관한 고시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받기로 하고, 조문명 중 ‘다른 사업에서 부당한 지배력 전이 방법’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므로 회계분리원칙을 담을 수 있는 긍정적 표현으로 기술하도록 함.
-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IPTV 사업자 외 다른 통신사업 등의 경쟁평가위원회와 유기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함.

아. 기 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4월 21일(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6:35)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비공개)

1. 회의일시 : 2008. 4. 21.(월), 15: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회의록 등은 차기 회의에서 확인하기로 함.

바. 의결사항

1) 방송발전기금 고시율에 관한 건-(주)와이티엔라디오 (2008-04-003)

사. 보고사항

1) 「전파법시행령」 개정추진에 관한 사항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비공개)

○ 박노익(융합정책과장)으로부터 2008.12.28.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시행령 제정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부처협의, 공청회,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

- IPTV 제공사업의 허가 시 심사기준은 법 제4조제4항의 심사사항으로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은 해당 심사사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고시하기로 함.(안 제3조)
-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 겸영금지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함.(안 제6조제2항)
- 다른 사업에서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방지 방법으로 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분리하도록 하되(안 제9조), 거대 사업자의 영업인원 투입으로 불공정한 사업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고시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함.
- IPTV 제공사업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전기통신설비를 동등 제공하도록 하는 필수설비의 범위를 IPTV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대체 설비를 이용할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를 보유한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로 하고, 세부적인 대상은 위원회가 고시하기로 함.(안 제12조)
- '전기통신 설비의 이용대가 산정'에 있어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및 운영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되, 시행령에 투자보수 산출시 투자위험 반영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 IPTV 콘텐츠사업자의 신고·등록·승인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기준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율 또는 시청점유율',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다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안 제16~19조), 법 제21조에서 방송법 제76조의 보편적 시청권을 준용하므로 '국민적 관심도'는 기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아. 기 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4월 30일(수)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6:25)